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7. 7 선고 2021가단48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6. 1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1. 9. 2. 접수 제123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09181호로 양수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8. 30. C은 원고에게 31,780,275원 및 그 중 8,752,617원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21. 6. 17. 사망하였다. C은 D의 자녀로 1/5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2021. 6. 17.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7.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09181호 판결에

대하여 C이 추완항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9884호 사건에서 2022. 5. 27.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문희

별지

목 록

1. 경기 안양시 만안구 대110.1 ㎡
2. 위 지 상
 - 벽돌조 스라브 단층주택 53.85㎡
 - 지층 4.07㎡
 - 부력조 스라브 단층 변소 0.89㎡

